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!
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성동구 제4선거구, 교육위원회 위원 황철규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정서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.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이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‘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’를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.

○ 또한 본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,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

합니다.

-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 소속으로 ‘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’를 신설하고,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.
- 또한 교육감과 학교장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,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시수 조정 및 행정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,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직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-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. 아울러,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-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